

2021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예산편성 기준

목	세	세세목	내 용	비 고									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기획자 인건비	○ 교육프로그램 회차당 기본 50,000원,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,000원 지급 ※1회 최대 12만원 - 기획자 인건비는, 효율적인 사업관리(회계, 기록 등)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 -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 (중복 지급 불가) ※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	공통 사항									
		강사비	○ 주강사 : 시간당 60,000원 / 보조강사 : 시간당 40,000원 -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※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-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- 사례비수령확인서(인적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, 교육/강연 일자 및 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	공통 사항									
		특강 강사 교통비	○ 강사의 육지 - 제주 간 항공비 실비 지급 ※ 항공권 등급은 이코노미만 가능 ☞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	공통 사항									
		초빙 강사료 (연수 등)	○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 - 예시 :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,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○ 1일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○ 2시간 초과 강연시 한 시간은 50%만 지급 가능 (2등급 강사 하루 3시간 강의 시, 150,000*2시간+75,000원*1시간=375,000원) 추후 정산증빙시에 반드시 강사 이력서 첨부 必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강사료</td> <td>1등급※</td> <td>2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2등급※</td> <td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3등급※</td> <td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1등급 : 대학총·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: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	구 분	등급	지급금액	강사료	1등급※	250,000/시간	2등급※	150,000/시간	3등급※	100,000/시간
	구 분	등급	지급금액										
강사료	1등급※	250,000/시간											
	2등급※	150,000/시간											
	3등급※	100,000/시간											
행사 진행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행사료</td> <td>1등급※</td> <td>20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2등급※</td> <td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>3등급※</td> <td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구 분	등급	지급금액	행사료	1등급※	200,000/시간	2등급※	150,000/시간	3등급※	100,000/시간	공통 사항	
구 분	등급	지급금액											
행사료	1등급※	200,000/시간											
	2등급※	150,000/시간											
	3등급※	100,000/시간											

		전문가 활용비 (학술 행사)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등급</th><th>지급금액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학술 행사비</td><td>1등급*</td><td>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</td><td rowspan="3">3시간 이내일 경우 (*) 금액 적용</td></tr><tr><td>2등급*</td><td>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</td></tr><tr><td>3등급*</td><td>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</td></tr></table> ※ 1~3등급은 강사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, 이력서 제출 必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학술 행사비	1등급*	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3시간 이내일 경우 (*) 금액 적용	2등급*	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3등급*	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	공통 사항									
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
학술 행사비	1등급*	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3시간 이내일 경우 (*) 금액 적용																						
	2등급*	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																						
	3등급*	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비 (210)	심사 및 자문료	심사 및 자문료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등급</th><th>지급금액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심사료 및 자문료</td><td>1등급</td><td rowspan="2">200,000원</td><td>• 2시간 기준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• 2시간 이상 : 150%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100,000원</td><td>• 5시간 이상 : 200%</td></tr><tr><td colspan="4">• 국외 : 실소요액</td></tr></table> ○ 자문료 지급 관련 -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(기획자, 강사, 보조강사, 책임연구원, 연구원, 보조연구원 등) 사례비 지급 불가 -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※ 1~3등급은 강사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심사료 및 자문료	1등급	200,000원	• 2시간 기준	2등급	• 2시간 이상 : 150%	3등급	100,000원	• 5시간 이상 : 200%	• 국외 : 실소요액				공통 사항				
	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
		심사료 및 자문료	1등급	200,000원	• 2시간 기준																				
	2등급		• 2시간 이상 : 150%																						
3등급	100,000원		• 5시간 이상 : 200%																						
• 국외 : 실소요액																									
번역료 및 감수료	번역료 및 감수료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지급금액</th></tr><tr><td rowspan="4">번역료</td><td>○ 외국어 ⇒ 한글 : 3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</td></tr><tr><td>○ 한글 ⇒ 외국어(영,일) : 60,000/A4 1매(800자)</td></tr><tr><td>○ 외국어 ⇒ 기타외국어 : 6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</td></tr><tr><td>○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/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</td></tr><tr><td>감수료</td><td>○ 필요시 번역료의 20%반영</td></tr></table>	구 분	지급금액	번역료	○ 외국어 ⇒ 한글 : 3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	○ 한글 ⇒ 외국어(영,일) : 60,000/A4 1매(800자)	○ 외국어 ⇒ 기타외국어 : 6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	○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/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	감수료	○ 필요시 번역료의 20%반영	공통 사항													
	구 분	지급금액																							
번역료	○ 외국어 ⇒ 한글 : 3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한글 ⇒ 외국어(영,일) : 60,000/A4 1매(800자)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외국어 ⇒ 기타외국어 : 6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/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
감수료	○ 필요시 번역료의 20%반영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 수용비 (01)	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	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등급</th><th>지급금액</th><th>비 고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편곡</td><td>1등급</td><td>500,000원/곡</td><td>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</td></tr><tr><td>2등급</td><td>400,000원/곡</td><td>*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</td></tr><tr><td>3등급</td><td>300,000원/곡</td><td>* 재편곡, 재편성,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/2 만 지급</td></tr><tr><td>작곡</td><td colspan="3">*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</td></tr><tr><td>감수료</td><td>등급무관</td><td>50,000원</td><td>• 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을 지급함.</td></tr></table> ※ 1등급 :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: 국내 시·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: 국내 음악대학,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편곡	1등급	500,000원/곡	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	2등급	400,000원/곡	*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	3등급	300,000원/곡	* 재편곡, 재편성,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/2 만 지급	작곡	*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			감수료	등급무관	50,000원	• 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을 지급함.	공통 사항
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																				
편곡	1등급	500,000원/곡	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																						
	2등급	400,000원/곡	*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																						
	3등급	300,000원/곡	* 재편곡, 재편성,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/2 만 지급																						
작곡	*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																								
감수료	등급무관	50,000원	• 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을 지급함.																						
	기타 진행비	○ 워크숍, 세미나,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, 현장주차비 등 ※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(240-01)로 책정·활용	공통 사항																						

		안내·홍보물 제작비	○ 팸플렛,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○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,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○ 제작관련 사례비로 개인에게 지급불가 (디자인비 명목하에 사례비 집행 금지) ※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	공통 사항						
		인쇄비	○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○ 백만원 이상 집행시 반드시 비교 견적서 (2곳) 포함 ○ 조달청 기준 참고	공통 사항						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회계 검사 수수료	○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(부가세 포함) ○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(수수료)로 포함 ○ 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기준금액</th><th>수수료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1천 5백만원 ~ 3천만원 미만</td><td>290,000</td></tr><tr><td>3천만원 ~ 4천만원 미만</td><td>346,000</td></tr></tbody></table> ※ 2021년 6월 이후로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음	기준금액	수수료	1천 5백만원 ~ 3천만원 미만	290,000	3천만원 ~ 4천만원 미만	346,000	공통 사항
		기준금액	수수료							
		1천 5백만원 ~ 3천만원 미만	290,000							
	3천만원 ~ 4천만원 미만	346,000								
	공동 사업비 (선택)	○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공동사업비 1식*1,000,000원	공통 사항							
기획 연구비 (필수)	○ 자체 역량강화 활동비 1식*1,000,000원	공통 사항								
	공공 요금 및 제세 (02)	공공 요금	○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, 택배발송, 쿼서 비스, 행사 보험료 등	공통 사항						
	임차비 (07)	차량/ 장소/ 기자재	○ 차량 임차 : 실비적용 -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,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- 특히, 프로그램 운영 기관·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○ 장소 임차 :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※매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, 문화기반시설에 한하여 임차비를 인정. 1회(3시간 기준)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(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) - 문화기반시설 :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예회관, 지방문화원,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○ 기자재 임차 :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	공통 사항						
	일반 용역비 (14)	외주 업체 용역비	○ 행사 대행업체 용역, 디자인 용역, 영상물 제작 용역(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), 홍보(프로모션) 대행업체 용역, 구매(제작용역) 등 ☞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비교견적(2곳) 시행	공통 사항						
여비 (220)	국내여비 (01)	여비 기준	○ 출장경비 지급 기준 ※ 반드시 여비 지출 전 담당자와 논의 후 지출할 것 <u>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, 2·5단계, 3단계 기간일 경우 도외출장 불가함, 추후 정산시 불인정 처리되며 해당 지출건 전액 반납</u>	공통 사항						

			구 분 내 역		지급방법	지급액		
			도외출장	교통비	실비	· 항공료, 승선료 지급 · 유류비 및 택시비, 렌트카, 고속도로 통행료, 대중교통비 <u>지출불가</u>		
				숙박비	실비 (1박당, 1인 기준)	· 서울특별시: 70,000원 · 광역시 60,000원 · 그 밖의 지역: 50,000원 *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'그 밖의 지역'에 해당		
업무 활동비 (240)	사업 추진비 (01)	회의 식비	○ 다과비 기준단가 : 3,000원 / 1인 1회 기준 ○ 회의식비 기준단가 : 20,000원 / 1인 1식 기준 ※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※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 ○ 산출예시 (100명 참석 행사를 종일을 진행할 경우) - 다 과 비 : 3,000원×100명×2식=600,000원 - 회의식비 : 20,000원×100명×2식=4,000,000원 ※ 회의식비가 사업비의 10%이상일 경우, 재단 담당자가 상세 산출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내역 불충분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※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, 2·5단계, 3단계 기간일 경우 회의식비 집행 불가함, 추후 정산시 불인정 처리되며 해당 지출건 전액 반납					공통 사항
인건비 (110)	일용 임금 (04)	보조 인력	○ 단기용역비(일용직) - 최대 1일 8시간, 70,000원 (1인) ※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,720원 적용 시간×최저임금(8,720원), 백원단위 올림 ex)3시간×8,720=26,160 → 27,000원 ※ 연간 30일 이내 활용					공통 사항